

L - PROJECT

(선진입법지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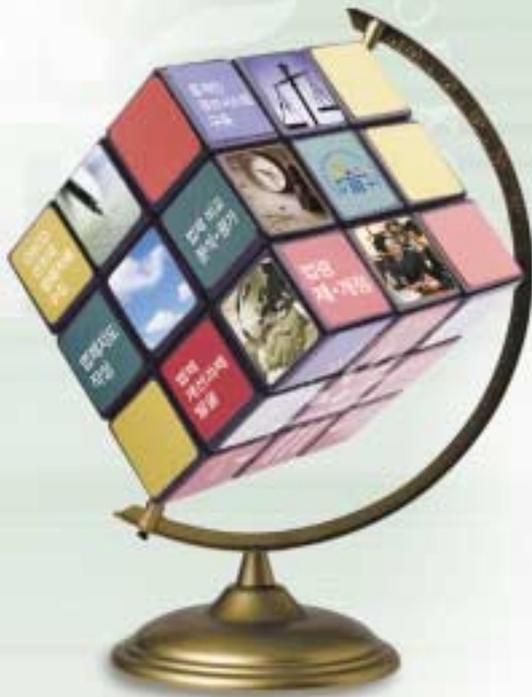


L - PROJECT

(선진입법지원시스템)



L-Project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발 간 사

법무부에서 이번에 획기적인 미래 구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까지 장기간에 걸쳐 법제 개선사업을 해 나가는 “L-project” 사업입니다.

옛말에 회사후소(繪事後素)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는 후에 하라는 것인데, 기본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추진하든지 간에 사상 누각이 되기 쉽습니다.

L-project는 기본을 다지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타입니다. 법무부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낡은 것을 뜯어 고치고 기존의 관행을 고쳐 나가게 됩니다.

환골탈태된 법무부의 미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법제 개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사례의 하나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새로운 업무의 지침서로서 실무에서 잘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널리 읽혀 활발한 논의의 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 2.

법무부장관

김 소 로

L-project를 출범시키며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어떤 기관이나 조직도 미래를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의 법 제·개정 업무와 법령자문분야의 새로운 미래구상을 위해 「민·상사 경제법제 선진 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법제개선 사업이란 뜻으로 legislation-project를 줄여“L-project”로 이름붙였습니다.

법무부 법무실의 업무방식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미래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근무형태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밝히는 길잡이로서 L-project가 많은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L-project 구상은 명쾌합니다. 법무부 법제업무 분야에 ‘대동여지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도도 없이 나침판도 없이 길을 헤매며 같은 자리를 뱅뱅 돌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법제 「분석·평가틀」이 필요합니다. OECD 선도국의 입법상황과 국내 기존 법제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법제분석의 기본틀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보다 앞선 국가의 법제를 일정한 틀을 가지고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나아갈 방향과 좌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야마다 우리나라의 법제와 법현실을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기초로 대동여지도와 같은 법제지도를 완성시킵니다. 법제 분야별로 현위치와 좌표가 설정된 부분적 지도가 그려지고, 다시 인접분야와 연계되어 전체 법제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체 법제지도에서의 위상과 분야별로 설정된 좌표에 따라 방향성을 가지고 법 제·개정이 진행됩니다.

최초의 구상은 「큐브」개념으로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큐브놀이를 하듯이 입법이 필요한 분야를 주변의 인접한 분야와 맞추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제분야가 입체적 형태로 인접 법률분야와 연계되어 유기적으로 분석되고 입법의 효과까지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생성과정을 거치면서 L-project가 만들어졌습니다. 향후 4년간 법무부 장기 사업으로 예산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더욱 발전되고 완성되길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단편적인 법 개정작업에서 벗어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입법개정작업이 가능하게 되고, 법령자문도 보다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에서 먼저 실시하는 이러한 새로운 과제가 장기적으로는 정부 차원으로 높여져서 국가 전체의 입법지원체제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민간차원에서도 적극 활용되길 바랍니다.

향후 L-project가 입법지원체계에서의 국제적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법률문화가 전파되길 바라는 신흥 아시아권 국가들에게도 좋은 입법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L-project” 사업을 출범시키면서, 그 취지를 널리 알리고 추진방향의 지침서로 활용하는 뜻에서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수고하신 법무실 심의관·과장들 그리고 검사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007. 2.

법무실장 김 준 규



CONTENTS

미래를 향한 구상 10

- A. 어떤 내용인가? 10
- B. 왜 필요했는가? 14
- C. 무슨 기능을 하는가? 19
- D. 어떻게 운영하는가? 41
- E. 미래를 향하여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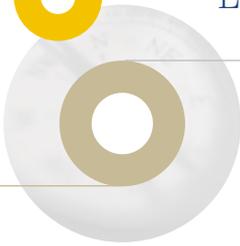
연구분야 56

- A. 민·상사 경제법령 중점과제 57
 - I. 상사 및 경제관련 법령 57
 - II. 민사관련 법령 77
- B. 국제규범 및 소송법제 중점과제 87
 - I. 국제규범 87
 - II. 소송법제 92

L - PROJECT

요약





요약



기존 입법방식의 한계

그 동안 우리나라 입법 개선작업은 체계화된 입법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안에 단편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법무부 소관 기본법인 민법, 상법 등을 개정함에 있어서도 별다른 입법자료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개정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백지상태에서 입법작업을 시작함으로써 개정위원들의 개인적 지식에 의존하여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간혹 외국 입법례와 그 운영실태에 대하여 개정 위원간의 의견차이가 노출되는 등 정확한 입법자료 수집의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새로운 입법방식의 필요성

이러한 기존 입법작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토대로, 입법 개선작업 추진에 앞서 외국의 입법자료와 국가별 입법체계를 분석한 체계화된 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보다 심층적인 입법 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입법자료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와 같은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입법작업 추진으로는 기존의 행태를 바꾸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L-project 추진

이에 법무부 법무실에서는 민·상사 경제법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입법지원시스템을 새로 만들고자 한다. 약칭하여 L-project라 부르기로 하는데, Legislation project(법제개선 추진사업)의 약자이다. 이는 민법, 상법 및 상법관련 특별법의 구체적인 법령 개정작업에 앞서서 미리 선진국의 입법자료를 확보하고,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과제를 동적인 큐브시스템 형태로 축적하여 입법과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L-project의 구체적 기능

L-project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요 기능을 갖고 있다.

- OECD 선도국 법령자료 수집
- 법제 비교 분석·평가
- 동적인 큐브시스템 구축
- 입법방향과 좌표를 나타낸 법제지도 작성
- 법제 개선과제 발굴
- 법령 제·개정 작업 추진 및 지원

① OECD 선도국 법령자료 수집

OECD 선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민·상사 경제 법제 주요 분야별 입법례 수집을 위하여 외국 연구기관 및 국내외 대학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자료를 수집한다.

② 법제 비교 분석·평가

수집된 각국 법제의 비교를 위하여 평가인자(예, 회사법상 사외이사 운영현황)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두고 각국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③ 동적인 큐브시스템 구축

법제지도는 평면적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큐브(Cube : 정육각형 형태로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기구)시스템 형태로 완성하여 여러 큐브들이 상호 논리적 연관성에 의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유기체처럼 작동되도록 한다.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기존의 연구용역보고서 차원을 한 단계 높여 컴퓨터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④ 입법방향과 좌표를 나타낸 법제지도 작성

법제지도란 법제 분석·평가들의 결과를 계량화하여 각국 법제의 현황과 좌표를 나타낸 그림을 말하는데, 법개정의 좌표 및 방향 설정의 척도로 기능하게 된다.

법제지도에는 분야별 각국의 입법상황을 표시한 전체적인 표지, 세부 항목별 구체적인 입법내용,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과제를 순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재한다.

법제지도는 우선 법무부 내부에서 활용하다가 시스템 완비 정도에 따라 관계부처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 되도록 한다.



⑤ 법제 개선과제 발굴

국민들 의식수준과 시대변화에 따르지 못한 법률을 우선 추출하여 법률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점을 적극 발굴한다.

⑥ 법령 제·개정 작업 추진 및 지원

각국 법제의 분석·평가와 우리 법제의 개선방향과 목표 등을 설정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작업에 착수하고, 타 부처 소관 경제법령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개선 권고안을 제안한다.



운영체계

L-project는 법무부 법무실내에 선진법제 운영단(단장 : 법무실장)을 만들어 운영한다.

선진법제 운영단은 운영팀, 지원팀, 외부자문팀, 외국기관 파견팀, 선진법제포럼, 연구용역팀으로 구성한다.

그 중 운영팀은 선진 입법지원시스템의 총괄 본부로서 행정업무를 기획·집행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자료로 축적하기 위한 체계적인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용역 발주 및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를 주관한다.

선진법제포럼은 정부 각 부처 고위공무원과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인사를 망라하여 법제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는 기관으로서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L-project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친 중장기 사업으로서 입법개선작업이 필요한 중요분야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활용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도록 한다.

추진분야

구체적인 추진분야는 우선 법무부 법무실 소관 법령인 민·상사 경제법령으로 한다.

민사 관련 법령 중 우선적 연구대상은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들 수 있으며,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국민소송제도 도입방안 등을 검토한다.

상사 및 경제관련 법령으로는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항공운송법의 제정, IT법제 개선방안 등이 우선적 연구대상이며, 경제관련 법령의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상법관련 특별법인 세법과 공정거래법 등 연구도 필요하다.



기대효과

L-project를 완성함으로써 법무부 입법작업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단편적인 법 개정작업에서 벗어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입법개선작업 추진이 가능하게 됨과 아울러 법령자문 역할의 충실화가 가능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OECD 선도국 수준의 입법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PART I

미래를 향한 구상

A. 어떤 내용인가?	10
B. 왜 필요했는가?	14
C. 무슨 기능을 하는가?	19
D. 어떻게 운영하는가?	41
E. 미래를 향하여	50

미래를 향한 구상



어떤 내용인가?

1. 의의

- ◎ L-project(Legislation-project)는 기존 우리나라 입법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입법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말함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선도국의 입법 자료와 우리나라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한 입법 개선과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 법무부 소관 민·상사 법령의 제·개정 작업시 입법지원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입법 개선과제로 수시 활용
 - 타 행정부처 소관 법령 자문시 입법지원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고품격의 법률 서비스 제공

◎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개선작업은 체계화된 입법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현안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진행

- 행정부 내 입법작업은 소관 법률별로 주무부처가 나뉘어져 있어 각 부처별로 개선작업을 진행
- 외국의 입법례와 개선과제를 포함한 체계화된 입법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내 부처는 없는 실정
- 민법·상법 등 기본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단편적으로 수집된 입법자료는 보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입법지원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못함
-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처는 정부 각 행정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심사의회한 법령안에 대하여 사후적 법령심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역할이 다름





2. 목표

◎ 법무부 입법작업의 체계화

- 인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타 부처와는 달리 법조인들이 직접 입법 개선작업을 진행하여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물적 인프라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입법지원시스템이 없어 특별한 강점을 지니지 못한 실정임
- 선진적인 물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정부 입법을 선도하는 법무부의 역할 제고 필요

◎ 법령자문 역할의 충실화

- 법무부에서 타 부처 법령안에 대한 자문시 정부내 로펌으로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부처 법령자문시 전체 법질서의 큰 틀에 대한 방향 제시를 위한 입법지원시스템 필요
- 예컨대, 공정거래법 법령자문이라면 상법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아울러서 종합 검토하는 충실한 자문 역할 필요

3. 기대효과

◎ 완성된 법제지도를 이용하여 법제개선작업 지속 추진

- 선진 외국의 입법자료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외국법과 국내법이 비교 분석된 법제지도를 완성 후 상시 활용
- 단편적인 법 개정작업에서 벗어나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입법개선 작업 추진

◎ OECD 선도국 수준의 입법체계 완성

-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OECD 가입국의 경제적 지위에 걸맞은 양질의 법률체계 구축
- 선진 입법을 통한 법문화의 향상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 도약의 법적 기반 조성

L-project VISION

-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앞서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 OECD 선도국 수준의 민·상사 경제법제 완성



왜 필요했는가?

1. 기존 입법작업의 문제점

-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외형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법문화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실정임
 - 고유법·대륙법·영미법 규정의 혼재, 산발적인 외국제도 수입으로 인하여 개별 법률간 부조화를 불러 일으킴
 - 법 규정간의 연결 체계 미비로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을 촉발
 - 법제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결여 되어 입법정책 수립에 난관 초래
- ◎ 법무부 소관 기본법 개정시 개정위원회를 통하여 외국 입법자료나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사항을 단편적으로 수집
 - 법무부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입법 개정작업을 하지 못한 채 외부의 요청에 의하여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음
 - 개정위원들에게 먼저 외국 입법자료나 국민 입법제안 자료 등을 제공하고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야 하나, 수집된 자료가 별로 없어 소극적인 입장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법령 제·개정 방식 개선

◎ 입법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 법제지도를 토대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입법의 방향성을 결정
- 법률전문가,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를 포함한 국민들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입법 쟁점사항을 확정 후 개정 시안 마련

- 연구용역에는 개정시안 및 쟁점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고, 연구용역은 개인보다는 공동연구팀에게 발주
- 입법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축적된 입법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시안 작성시 조문화 작업까지 완료

◎ 개정위원회 구성하여 논의 후 법무부 개정안 최종마련

- 각 분야별 최고 권위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개정 위원회는 개정시안에 대한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
-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법무부 주도하에 체계적인 입법을 추진하면서 중점 과제 위주로 6개월 이내 운용



- ◎ 입법작업시 전체 법질서의 큰 틀에서 검토되지 못한 채 해당부처에서 단편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중복 입법도 상존
 - 전체 법체계에 대한 연결성 미비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령간 심한 불균형 발생

- ◎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즉흥적인 법개정 작업으로 관련 특별법이 난무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법률 전문가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특별법도 등장
 - (예시)부동산등기관관련 민법 특별법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 (예시)회사 설립·운영관련 상법 특별법 : 증권거래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

2. 새로운 패러다임의 입법지원시스템

- ◎ 기존 입법작업에 대한 반성적 고려를 토대로 민·상사 경제법제 선진화를 위한 입법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현재와 같은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입법작업 추진으로는 기존의 행태를 바꾸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 노출
 - 구체적인 법령 개정작업에 앞서서 미리 선진국의 입법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과제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축적하여 입법과제로 활용
- ◎ 입법작업 추진에 앞서 외국의 입법자료와 국가별 입법체계분석 등 중장기 입법정책 수립 필요

 - 개정위원들에게 의존하여 단편적으로 지식을 습득하여 법 개정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 노출
 - 종전에도 선진국가의 입법례를 수집하여 자료로 축적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논문이나 용역보고서의 형태로 도서관 서고에 쌓여 있어 실제 활용되지는 못하고 사장되는 실정
- ◎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정비작업

 - 민법, 상법, 형법 등 기본법 뿐만 아니라 타 부처 소관인 관련 특별법을 함께 아우르는 총괄적인 입법체계 필요

- 타 부처 소관 상당수 법률들이 기본법에서 파생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법과 저촉관계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받지 않은 채 관련 특별법이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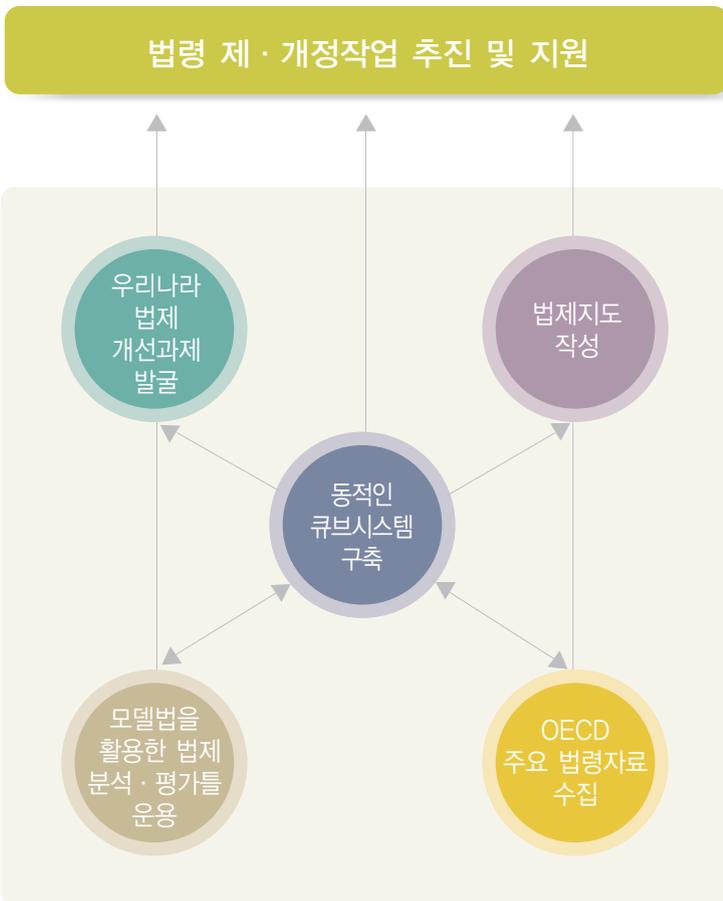
◎ 보다 심층적인 입법 개선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입법자료 구축 체계로 전환할 필요

- 새로이 구축하고자 하는 선진 입법지원시스템과 종전의 연구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動)적인 변환”에 있음
- 기존의 연구보고서는 활자로 고정되어 활용가능성이 크지 않는 반면, 선진 입법지원시스템은 입체적이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고 계속하여 수정 변환됨으로써 수시로 활용 가능





무슨 기능을 하는가?





1. OECD 선도국 법령자료 수집

◎ 연구용역 등을 통한 법령자료 수집

- OECD 선도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칸디나비아 3국(핀란드 등)의 민·상사 경제법제 주요 분야별 입법례 수집을 위하여 외국 연구기관 및 국내외 대학에 연구용역
- 외국법령수집은 세계 기구와 각국의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일일이 연구하는 것이 아님

◎ 선진 입법시스템 현지 견학

- OECD 선도국 입법시스템의 운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외국 법무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선진 입법시스템 견학
- 선진 외국의 입법자료 수집을 위해 OECD 본부 또는 EU 본부에 검사 파견 추진

◎ 세계은행의 법률도서관 활용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Team에서는 전세계 5,000여개의 법률을 담고 있는 법률도서관(<http://www.doingbusiness.org/LawLibrary/>)을 운영
- 국가별 검색과 10개의 주제별로 은행법 및 신용법, 파산법 및 담보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과 회사법, 노동법, 토지 및 건물법, 증권법, 세법, 무역법 검색을 제공

◎ 각국의 법률정보 웹사이트 활용

미 국 LexisNexis(<http://www.lexis.com/>)

영 국 OPSI(<http://www.opsi.gov.uk/>)

독 일 JURIS(<http://www.juris.de/>)

프랑스 Legifrance(<http://www.legifrance.gouv.fr/>)

핀란드 FINLEX(<http://www.finlex.fi/>)

노르웨이 Lovdata(<http://www.lovdata.no/>)

스웨덴 Lagrummet(<http://www.lagrummet.se/>)

일 본 E-gov(<http://law.e-gov.go.jp/>)



2. 모델법을 활용한 법제분석 · 평가들의 운용

◎ 법제분석 · 평가들의 의의

- 법제분석 · 평가들이란 선진적 법제를 갖춘 나라들의 법제를 분석하는 틀, 즉 도구(Tool)를 의미
- 세계기구들의 모델법과 국제조약 그리고 용역보고서의 핵심어들은 법제분석 · 평가들의 기초가 됨
- 법제분석 · 평가들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분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여러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통일적 법제 분석 · 평가들을 마련하는 것이 L-project의 목표 중 하나임
- 법제 분석 · 평가들에는 여러 비교인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L-project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임

◎ 국제적 차원의 규범통일 논의 반영

- UNCITRAL,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UNIDROIT 등 국제적인 통일규범의 성안을 주도하는 권위있는 기구의 논의현황을 상시 분석
- 국제적 논의를 거쳐 완성된 국제협약, 모델법 등 각종 규범과 주석서 축적

◎ 모델법의 활용

- 평가인자가 반영된 모델법(Model Law)을 기준으로 각국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 모델법이 존재하는 분야는 소수의 일부 분야에 불과하므로 모델법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는 다른 분야의 모델법 제정과정을 참고하여 평가인자를 도출

◎ 비교법학의 활용

- 상기 국제적 차원의 통일규범이나 모델법들은 모두 비교법학의 산물들이므로 비교법학의 유용성이 인정되고 있음
- 최초로 입법적 비교법학을 시도한 나라는 프랑스였지만 학문적 비교법학은 독일에서 수립되었으며, 그 대표적 산물이 바로 독일 민법임
- 사법분야의 비교법연구의 중심지는 국가적 지원을 받는 막스 플랑크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Max-Planck-Institut fuer Auslae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가 있음



3. 동적인 큐브시스템(Cube System) 구축

◎ 동(動)적인 큐브시스템(Cube system)

- 여러 큐브들이 상호 논리적 연관성에 의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원리에서 착안됨



- 찾고자 하는 분야의 단어 하나만 입력하여도 관련된 자료를 모두 검색한 후, 중요 우선순위와 관련성에 따라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초보자에게는 보다 쉽게 그리고 전문가에게는 보다 충실하게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
- 큐브시스템은 법제평가·분석틀에 의하여 작성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라 각 자료들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정해놓고 사용자가 최단시간 내에 최적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당 자료를 제시하는 시스템을 의미함

◎ 동적인 큐브시스템은 단순한 DB가 아님

- 단순히 해당 자료에 검색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성도 없는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던 기존의 DB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임

◎ 법제분석 · 평가들의 활용

- 법제분석 · 평가들에 따라 작성된 용역보고서들은 자료들의 연관성을 제시함으로써 큐브시스템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됨

◎ 법제지도의 발전

- 법제지도는 큐브시스템을 통하여 고정적인 평면개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이 존재하는 입체적 법제구축현황으로 발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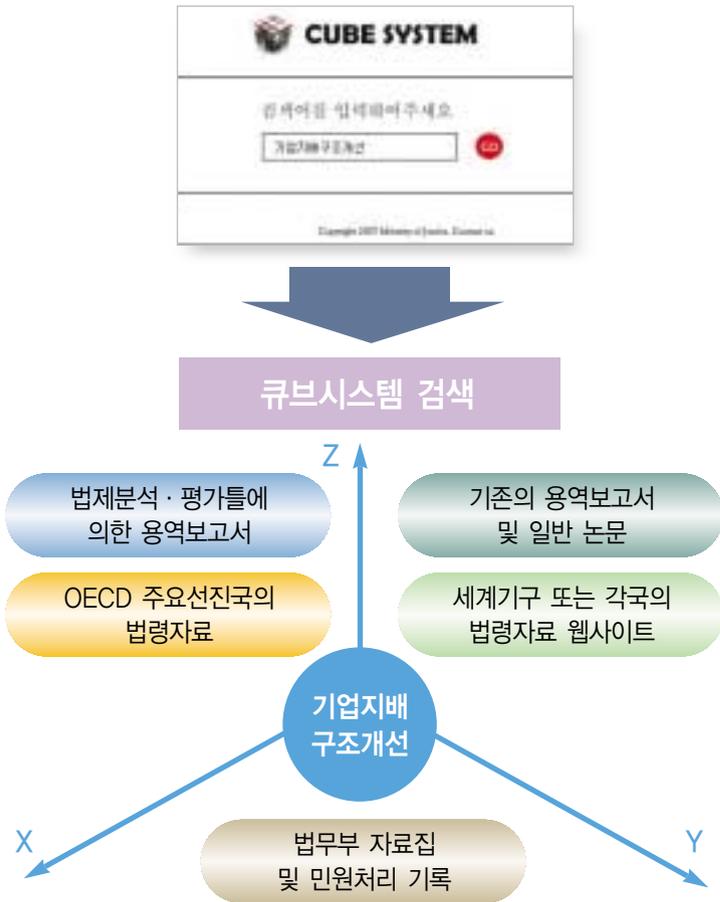
◎ 큐브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 큐브시스템은 사용자와 운영자에 의해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짐
- 사용자는 새로운 항목(Category) 또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언제든지 큐브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있음
- 운영자 또한 직접 새로운 항목 또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큐브시스템의 컴퓨터 활용 예시

※ 검색어 기업지배구조개선 입력시 시스템 동작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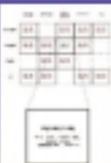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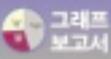
※ 법제분석·평가들에 의한 영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관련 핵심어 및 관련성 우선 순위에 따른 검색





CUBE SYSTEM 검색결과

법제지도

그래프 보고서

관련판례
관련논문
관련보고서

검색어: 기업지배구조개선

핵심어: 집행일원
사외이사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전문가: ○○
○○

주요보고서: MOJ2007-00
MOJ2007-00

심결례: 법무부 자료집 ○○평

주요국가: 미국
독일

도입여부: 장기검토

관련분야: Corporate Governance
소수주주권 강화
감사위원회

관련웹사이트: oecd.org/topic

Copyright 2007 Ministry of Justice. Contact us.

※ 기존 DB의 경우에는 검색어 기업지배구조개선 입력시 단순히 기업지배구조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건을 찾아주는 것에 불과하였으나, 큐브시스템은 법제 분석평가들에 따른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논리적 관련 사항을 모두 제시한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임



4. 법제지도 작성

◎ 법제지도의 의의

- 법제분석·평가들에 의한 보고서들을 일목요연한 지도형태로 작성한 도표를 의미하며, 법제지도를 통하여 각국의 법제연구 현황을 쉽게 파악
- 법제지도에는 모든 법제구축현황을 도표로 나타낸 「전체법제지도」와 큐브시스템에 의하여 일정분야에 관해 우리나라와 타국의 법제현황을 그래프로 비교한 「비교법제지도」의 2종류가 있음

◎ 국제규범 분석결과를 법제지도에 우선 반영

-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협약·모델법 등을 개별국 법제보다 우선 분석하여 법제지도에 배치
- 국제규범의 좌표를 중심으로 개별국 법제를 분석·배치하여 법제 스펙트럼 분석의 다각화

◎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법제지도 변경

- 법제지도는 향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어야 본래의 취지를 충실히 살릴 수 있음
- 경제상황에 따라 비교국가나 비교척도·비교인자 등 구체적인 평가인자를 변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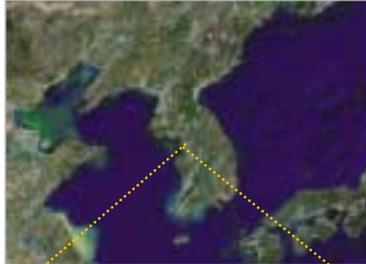
◎ 법제지도 완성순서

연도	민사법 및 소송법	상법 및 기업법제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동산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등기 및 거래 제도 개선방안 ② 금융담보 활성화를 위한 법률 인프라의 선진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회사에 대한 상사특례규정 개선 방안 연구 ② 21세기 항공우주분야를 선도 하는 항공관련 법제도 정비 ③ 선진적 기업환경 토대 마련을 위한 기업관련 법제 개선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소비자보호 관련 개선 사항을 비롯한 민사법제 정비방안 ② 집단소송제를 비롯한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으로 국내법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③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e-Business 활성화 방안 ② 기업의 법률리스크 감소를 위한 사전 심사제도 연구 ③ 기업회계 분야의 선진시스템 도입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민사 관련 IT법제 정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주식제도 개선방안 ② 새로운 보험계약 유형도입을 통한 보험계약법제 연구 ③ 기업집단의 시장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선진적 대처 방안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성년 후견제도 도입연구 ②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민법의 현대화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주권익강화와 경영효율성의 조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② 도산법제의 운영상 문제점 및 새로운 개선방안 ③ 국내기업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방안

※ 연도별 연구분야의 항목들은 외국입법례 조사와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과제가 동시에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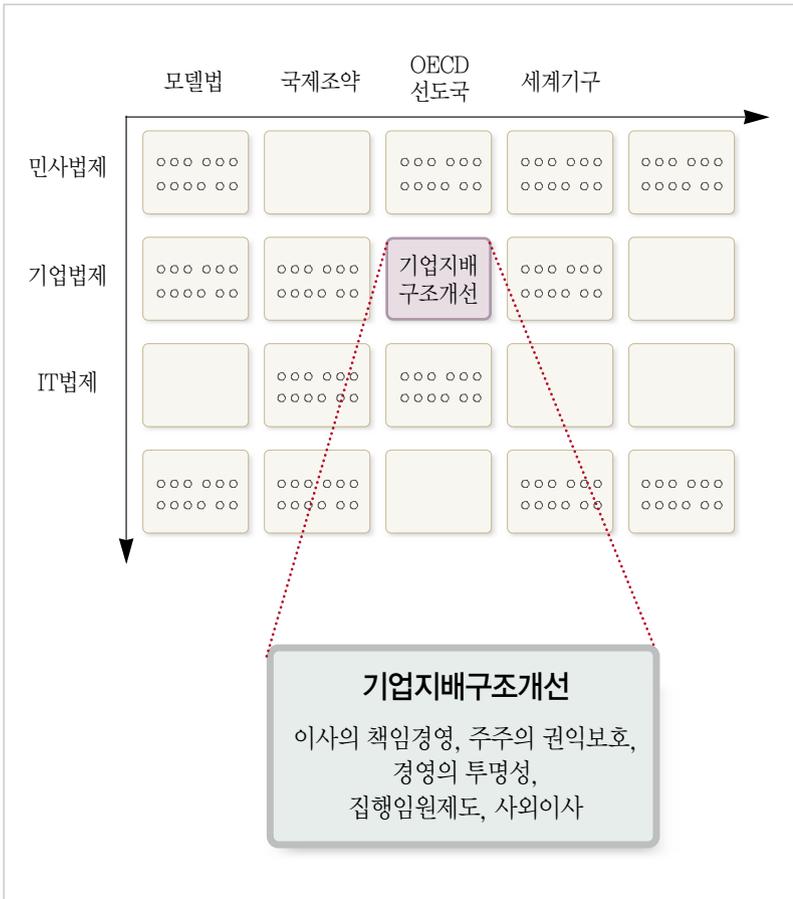


◎ 법제지도 작성원리의 예시



※ 마치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법제전반을 볼 수도 있고 세부 사항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세부사항을 볼 수도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 여러 세부부분을 모으게 되면 전체적인 형상을 알아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이 법제지도의 작성원리임

◎ 전체법제지도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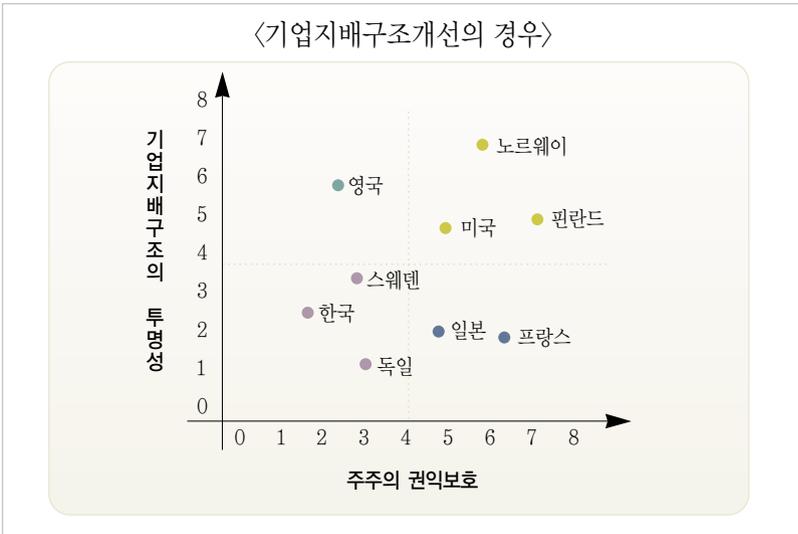


※ 우리나라 각 지방의 부분 부분을 모아 전국 지도를 완성한 조선시대의 대동여지도 제작형태를 원용하여, 분야별로 각국의 법제지도를 순차적으로 만들어 민상사법제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지도를 완성시킴



- 전체법제지도에는 분야별 각국의 입법상황을 표시한 전체적인 표지, 세부 항목별 구체적인 입법내용,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과제를 순차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기재

◎ 비교법제지도 작성방법 및 예시



※ 법제분석·평가들에 따른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핵심어와 국가별 수치를 큐브시스템을 통하여 그린 그래프형태의 법제지도로서 상기 그래프 외에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가 가능함

- 전체법제지도 중 특정분야에 관하여 세계에서 우리법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
- XY축의 비교인자를 계속해서 바꾸어 비교함으로써 특정영역에서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이상의 비교인자를 선택하여 여러 차원의 비교도 가능

5. 우리나라 법제 개선과제 발굴

◎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과제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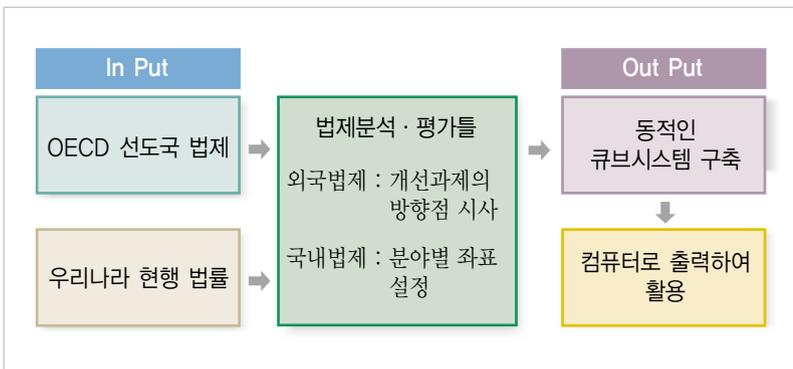
- 국민들 의식 수준과 시대변화에 따르지 못한 법률을 우선추출하여 법률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점을 적극 발굴

◎ 국민들로부터 법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폭넓은 의견 수렴

-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련 단체 의견조회 적극 활용

◎ 국제규범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 관련 국제협약과의 신속한 비교·분석 작업을 통해 우리 법제의 개선과제 발굴
- 선정된 개선과제에 대한 타국의 반영현황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



◎ 법제지도의 활용 : 법개정의 좌표 및 방향 설정의 척도

- 법제지도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법제가 무엇인가를 쉽게 파악
- 기존의 수동적이고 단편적인 법 개정작업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입법개선작업 추진 가능



6. 법령 제·개정작업 추진 및 지원

◎ 각국 법제의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의 개선방향과 목표를 설정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

- 민·상사 법령 등 법무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 법제 개선과제 연구결과 타 부처 소관 경제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여 해당 부처에 제안

◎ 국제적 논의결과 반영

- 법무부 소관 사항 입법추진시, 기존에 축적된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반영
- 타 부처 소관 입법 지원시, 관련 분야에 대한 국제규범적 논의 결과를 지원함과 아울러, 이를 반영한 법제개선 방향을 자문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입법 선진화·국제화 도모
 - ※ 시스템을 통하여 만들어진 우수한 법령은 법률문화 교류사업으로 해외 수출 방안 검토



7. 연구용역지침서 제시

◎ 기존 연구용역보고서의 현황

- 기존의 연구용역보고서들은 단순히 외국법을 연구보고하거나 외국법을 해석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일일이 재분석해야 하는 문제점을 내포함

◎ 연구용역지침서의 역할

- 연구용역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연구용역보고서들은 입법과정에 필요한 실질적 비교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실제 입법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연구용역지침서는 연구자가 큐브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는 양식(format)역할을 하기도 함

◎ 연구용역지침 내용의 예시

- 향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L-project에 의해 발주된 모든 연구용역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A. 연구대상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영역을 가능한한 한정적으로 제한하여 기술

B. 관련 외국법

당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외국법을 검색하여 기술

C. 제정, 개정, 적용

각각의 법규범의 제정·개정·사회생활 속에서의 적용에 관한 인과관계를 기술

D. 다른 법규범 그리고 경제질서와 정치질서

연구주제 외에 다른 법규범 그리고 경제질서·정치질서의 상호 작용에 대해 기술

E. 내재적 가치질서

각국의 법규범 속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질서를 기술

F. 유사성과 이질성

각국 법규범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선별하여 기술

G. 도입여부 검토

각국 법규범의 유사성과 이질성에 대하여 연구자가 도입여부 검토(계량화에 의한 결과를 제시하면 더욱 좋음)를 실시

※ 도입여부 검토는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Team의 주제(Topic) 선정 및 계량화 기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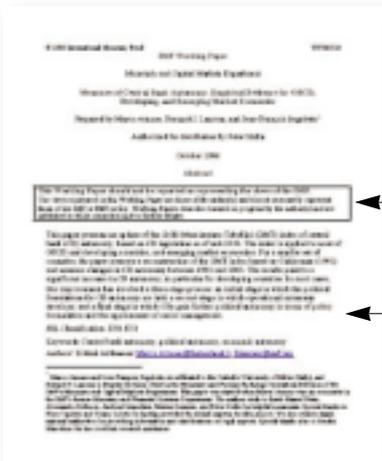


◎ 핵심어(Key Word) 도출

- 용역보고서에는 해당 연구용역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어(Key Word)를 도출하여 기술
- 핵심어는 추후 해당분야의 다른 국가의 법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평가인자로서의 역할을 함
- 핵심어는 큐브시스템에서 항상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검색되며, 문서간의 논리적 연결고리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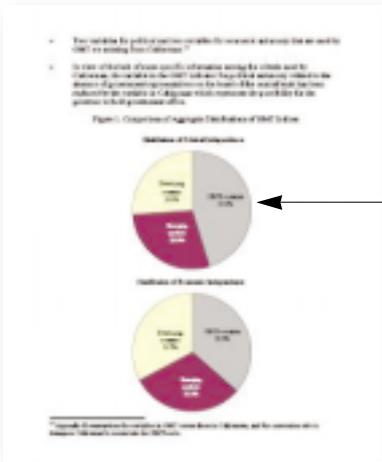
◎ 용역사업보고서 예시





KEY 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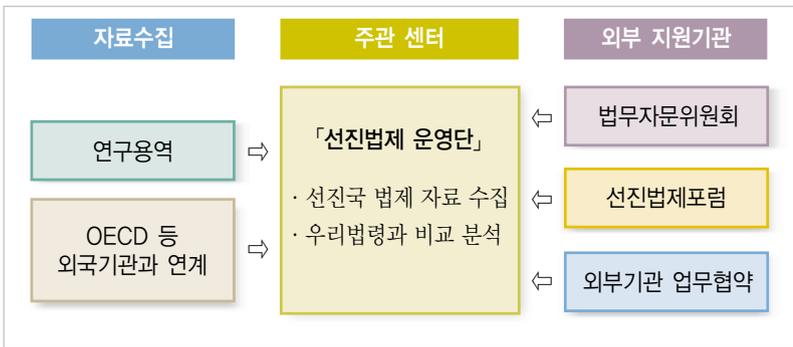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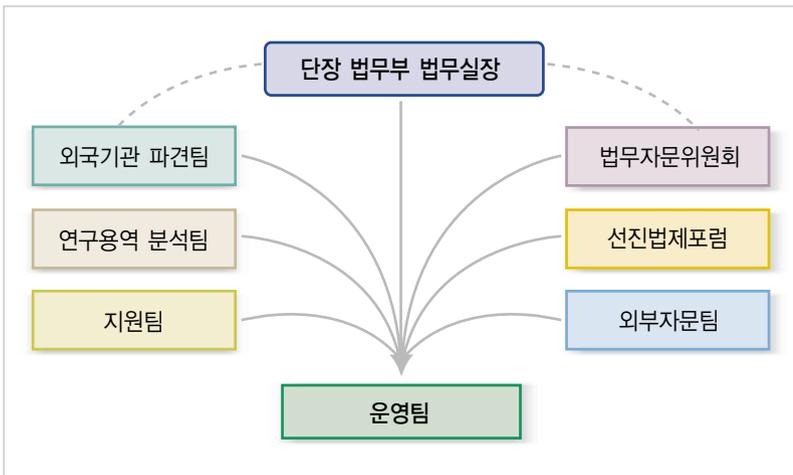
그래프를 활용한
주요 내용 소개



어떻게 운영하는가?



1. 주관센터인 「선진법제 운영단」 설치





◎ 「선진법제 운영단」구성

- 입법지원시스템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총괄 본부로서 단장은 법무실장
 - ※ 기존의 법무부내 법무실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무실 조직개편 작업과 연계 추진
- 산하에 운영팀, 지원팀, 외부자문팀, 외국기관 파견팀, 연구용역 분석팀으로 구성되며, 별도 조직인 법무자문위원회 및 선진법제 포럼과 연계하여 활동
- 운영팀은 상사팀장 총괄하에 법무심의관실 검사를 위주로 국제 법무과와 법무과 검사 등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
 - ※ 변호사나 외국변호사를 선발하여 업무를 전담시키거나 영어전문인턴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 지원팀은 법무심의관과 국제법무과장, 법무과장으로 구성하여 법무실내 행정업무 지원기능 담당
- 외부자문팀은 선진 입법지원시스템에 다양한 자문을 해줄 대학교수, KDI 연구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

◎ 「운영팀」 업무

- 선진 입법지원시스템의 총괄 본부로서 외부자문팀과 지원팀의 협조를 받아 행정업무를 기획, 집행
- 국민들로부터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자료로 축적하기 위한 체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 외국 선진입법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 및 세미나, 학술대회 개최 주관
-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축적된 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외부 연구지원 체계

- 주관 센터인 선진법제 운영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외부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선진법제 운영단은 입법지원시스템의 집행기관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원하고 보조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지원기관이 필요
- 입법지원시스템의 국민의견 수렴 기관에 해당하는 법무자문위원회와 선진법제포럼 구성



2. 법무자문위원회 운영

◎ 개요

- 법무자문위원회는 1972년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법무부장관에 대한 자문기구임
- 산하 특별분과위원회는 민법, 상법 등 법무부 소관 개별 법령의 정비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는 지금까지 실질적인 자문활동 없이 형식적 활동에 그침
- 본 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각종 법령 제·개정에 관한 자문기구로 재설정하고, 그 기능에 합당한 신규위원을 위촉하여 활동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

◎ 위원회의 구성

- 내부기관인 선진법제 운영단이 추진하는 작업에 대한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왕성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도록 원로급과 중진급 인사를 혼합
-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주축으로 경제계, 언론계 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



◎ 구체적인 운용 방법

- 본 위원회를 민·상사 경제법제 선진화를 위한 입법지원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자문기구로 활용
 - ※ 특별분과위원회는 본 위원회 및 입법지원시스템의 지원하에 지속적으로 법령 제·개정 추진
- 특별분과위원회를 위주로 운영하며 분야별 수시 자문기능 강화
 -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 활동상황 및 성과 설명
 - 위원들에게 개별 자문 필요 안건을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시로 자문



3. 선진법제포럼 운영

◎ 필요성

- 법제개선과 관련된 국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지원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완전 정착을 위한 폭넓은 외부 지원 세력의 확보
- 법무자문위원회와 별도의 폭넓은 외부지원체계의 하나로서 선진법제포럼 운영

◎ 조직·운영 방법

- 정부 각 부처 고위공무원과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인사를 망라하여 포럼을 구성
-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격인 인사 10여명을 선정하여 포럼 준비단을 구성하고 포럼 준비단으로 하여금 선진법제운영단과 협의하여 약 100명으로 포럼 회원 모집 절차 진행
- 포럼 설립 후에는 준비단은 포럼의 실질적인 운영단으로 재편하고, 법무부의 선진법제 운영단은 포럼의 총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하는 등 포럼 지원기구 역할 병행

◎ 기능

- 분기별 세미나를 통하여 법제 개선과 관련된 국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
- 포럼이 주최한 세미나, 학술대회시 발표내용은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입법개선 자료로 활용
-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는 법무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책으로 추진





4. 정부부처와의 법제개선 협조체계 구축

◎ 필요성

- 정부 각 부처는 전체 법질서에 관한 근본적 검토 없이 단편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거나, 다른 부처와 소관이 공통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협의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음
- 법령 규정 중에는 부처 이기주의에 따른 중복 입법까지 있어 전체 법질서 체계상 부조화 초래
- 법무부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협조체계 구축 방안

- 우선, 법무부 법무실과 경제부처 관련부처간 법제개선 관련 의견 교환 창구 개설
- 경제부처의 요청에 따른 수시 법제개선 자문 실시 및 경제부처에 대한 수시 법령개선 권고
- 경제부처와 함께 우리 경제법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정부 기관 합동 학술대회를 분기별로 개최

5. 외부기관 업무협약 체결

- 민·상사 및 경제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내외 대학 및 연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아웃소싱 작업 추진
- 외부자문단(대학교수, KDI, 변호사)과 연계하여 입법지원시스템 추진상황, 연구용역과제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
- 기존 민사법학회 등과 연계하여 법무부 후원 학술대회 개최
 - ※ 법무부 공식 허가 학술단체 : 민사법학회, 부동산법학회, 보험법학회, 형사법학회 등
- 미국과 일본의 외국석학을 초빙하여 법제 개선과제에 대한 특별 강연 2회 실시



미래를 향하여

1. 일정

◎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친 중·장기 사업

- 해외 입법자료 수집 및 우리나라 법제 개선분야의 분석이 필요하므로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
- 법제 분석·평가들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각국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는 대규모 사업

◎ 입법 개선작업이 필요한 중요분야부터 계속적으로 진행

- 2007년 사업은 법제 분석·평가들을 이용한 부동산제도 개선, 금융담보제도 활성화, 기업 법제환경 개선 등으로 집중
- 2008년 이후 사업은 소비자보호관련 민사법제 정비,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 e-Business 활성화 등으로 확대
- 2010년에 분야별 입법자료를 종합하여 입법지원시스템 완성

◎ 연도별 도출 결과물

- 2007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업 법제환경 개선 등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부분적 성과물을 순차적으로 도출

- 2010년에 전체 법제지도를 완성하기 이전에도 분야별 법제지도를 이용하여 매년 입법 개선작업으로 반영 가능

◎ 2010년 이후의 사업

- 법제 분석 · 평가들과 큐브시스템 등이 상당부분 완성된 이후 대국민 서비스 적극 검토
- 법률은 영구한 것이 아니며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변화되므로 지속적인 연구사업과 큐브시스템 개선 필요





2. 예산

◎ 2007년에 신규 사업예산 4억 6,200만원 반영

- 기존의 예산항목 중 경제관련법령 정비 및 시행 항목을 흡수 통합
- 사업의 특성상, 예산 투입은 주로 연구용역과 설비 구입 분야로 집중

◎ 2008년 이후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규모 50억원

-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팀에서 추진실적 점검 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 효율적 분쟁해결제도, e-Business 활성화,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주식제도 개선, 새로운 보험계약 유형도입, 주주권익강화와 경영효율성의 조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분야를 넓혀가며 지속적인 연구용역사업 진행
- 2010년에는 분야별 입법자료를 종합하여 입법지원시스템 완성
- 큐브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선정 및 서버 구입

3. 활용

◎ 범 정부차원으로 확대

- 법무부에서 먼저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범 정부차원의 법제개선사업으로 확대
- 2009년 이후에는 큐브시스템이 모든 정부부처에 공유되므로 각 부처의 법제개선사업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됨

◎ 국제적 모델

- 우리나라에서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이 잘 활용되면 OECD국가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전파되어 국제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
- 특히 법률문화 교류사업을 하는 아시아권 국가들에게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음

◎ 학술적 활용

- 학술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운영되는 선진입법지원시스템은 그 보유자료 자체가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학술단체와 공유함
- 2010년 이후에는 학문적 또는 개인적 관심을 가진 국민들은 큐브 시스템에 접근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 가능토록 추진

PART II

연구분야

A. 민·상사 경제법령 중점과제	57
I. 상사 및 경제관련 법령	57
II. 민사관련 법령	77
B. 국제규범 및 소송법제 중점과제	87
I. 국제규범	87
II. 소송법제	92

연구분야

연구분야 선정

- ◎ L-Project는 우리나라 법령 중 민·상사 경제법제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해당 연구분야의 주요 쟁점을 분석
 - 우선 법무실 소관 법령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
 - 검찰국 소관인 형사관련 법령은 입법지원시스템 설치의 성과에 따라 추후 포함여부 검토
- ◎ **상사 및 경제관련 법령**
 - 상법, 항공운송법, 도산법, IT법제 등
 - 경제관련 법령 중에는 효율적인 법령자문을 위하여 상법의 특별법인 세법과 공정거래법 분야도 아울러 연구 필요
- ◎ **민사 관련 법령**
 - 민법을 비롯하여 부동산 법제, 임대차 법제, 성년 후견제도 등 포함
 - 민사관련 법령 중에는 민법 및 민사소송법 관련 특별법으로 도입될 수 있는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국민소송제도,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국제규범, 국제민사공조분야도 아울러 연구



민·상사 경제법령 중점과제

1. 상사 및 경제관련 법령

■ 상법(회사편)

1. 기업지배구조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란 기업의 경영진, 이사회 (또는 감사회), 주주 기타 이해관계집단의 상호관계와 책임에 관한 구조를 말함
- 1990년 이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주식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OECD 본부에서는 회사 지배구조 원칙을 발표하기도 함
- 2006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기업이사회의 독립성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125개국 중 86위에 그쳐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음



◎ 외국의 입법례

▶ 미 국

- 대규모 기업에서 이사회는 스스로 업무를 행하지는 않으며 기본적인 경영정책을 수립하고 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장 등 집행임원(Officer)에게 경영을 위임하는 단층적 이사회 제도(single board system)를 지님

▶ 독 일

- 경영기관인 이사회로부터 감독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사회는 경영을 전담하고, 감독업무는 감사회가 전담하는 이원적 이사회 제도(dual board system)를 지님

▶ 일 본

- 이사회와 별도의 감사제도를 두는 등 종전에는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최근에는 집행역제도 등 미국식 제도를 많이 도입

◎ 개선방안

- 기업지배구조를 선택함에 있어서 최적의 답안은 없으나,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필요
- 미국과 일본에서 채택되어 있는 집행임원 제도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사외이사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선진국의 운영실태를 효과적으로 우리기업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2. 상법과 증권거래법 규정의 조정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의 설립·조직·운영·활동 등에 대한 규제법규가 상법을 비롯한 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 산재되어 있음
- 상법의 특별법처럼 인식되고 있는 증권거래법에는 상법과 관련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이 26개조(증권거래법 제189조 내지 제193조)에 이룸
-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증권거래법의 고유영역에 속하지 아니 하는 상법에 대한 각종 특례규정은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
- 회사의 설립과 기관구성 및 기관간의 권한분배 등에 관한 기본법은 상법이므로 각 법에 산재되어 있는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

◎ 개선방안

- 증권거래법상의 특례규정을 상법으로 통합하거나, 독립된 특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 연구



3. 주식매수권(Warrant)제도의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주식매수권이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가격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스톡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고 외부 인사에 대한 보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 기업측에서는 도입 필요성을 많이 주장

◎ 개선방안

- 회사의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및 경영권 안정수단으로서의 효용이 기대되는 주식매수권의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4. 감사기능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의 선임시 엄격한 자격제한 및 결의요건을 정하여 형식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 확보를 담보하기는 어려움
- 상법과 증권거래법에서는 감사의 자격이나 선·해임절차, 직무 및 권한 등에 관하여 규정할 뿐 감사업무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지원 조직의 설치 등 효율적인 감사제도 구축 방안 연구

■ 상법(보험편)

1. 보험약관 교부·명시의무

◎ 현황 및 문제점

- 상법 제638조의3 제2항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중첩적용설과 상법적용설 대립
- 설명의무위반 주장을 남용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보험계약자가 보호되는 불합리한 현상 발생

◎ 외국입법례

- 독일보험계약법개정 정부안 제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와 관계없이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철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보험증권·보험약관 등의 내용에 구속됨
- 일본소비자계약법 제4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함

◎ 개선방안

-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되,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되도록 개정 검토



2. 보험계약 해지권

◎ 현황 및 문제점

- 고지의무 등의 위반사실과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보험자가 그 고지의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까지도 가능한가가 문제됨
-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이나, 이에 반해 종전의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례나 현재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결정하여 대립

◎ 외국입법례

- 일본도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음
- 독일보험계약법 제21조는 명문의 규정으로 해지권 인정
- 영미법계와 프랑스에서는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면책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 논란의 여지가 없음

◎ 개선방안

-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상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검토

3. 보험사기의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부풀려서 실제 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보험자를 기망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기에 해당
- 특종보험보통약관 제22조와 화재보험보통약관 제20조에서는 보험사기의 경우에 보험금청구권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외국입법례

- 독일보험계약법 제22조는 보험계약자가 위험에 관한 사정을 악의로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여 보험자를 기망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
- 프랑스보험법 제L.113-11조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범죄나 고의적 불법행위가 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의 실권을 규정한 일반조항은 유효하다고 규정

◎ 개선방안

- 중요한 사항의 악의적인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함이 타당



■ 항공운송법

1.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항공운송국가인 반면 동시에 항공운송의 증가로 인한 항공기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항공운송의 경우 피해의 국제성에 따른 법적 분쟁의 복잡화·대형화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최근 성립한 조약과 각국의 입법추세는 무과실책임 및 무한책임으로 전환
-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에 관하여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태이므로 육상운송 또는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음

2.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 **Warsaw Convention(바르샤바 협약, 1929년)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한도로 제한
- **Hague Protocol(헤이그 의정서, 1955년) :**
Warsaw 협약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2003년 현재 134개국 이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가입
-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 협정, 1966년) :**
미국을 출발·도착·중간기착지로 하는 국제운송에 적용
- **IATA 회원사간 협정(IIA : IATA Intercarrier Agreement on Passenger Liability, 1995-1996년) :**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회원 항공사들 간의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포함하여 일본, 미국 등 약 123개 항공사들이 서명
- **Montreal Convention(몬트리올 협약, 1999년) :**
100,000 SDR 까지의 손해에 대해서는 여객자신의 고의 또는 기여과실이 없는 한 항공운송인은 무과실항변을 못함



3.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입법례

▶ 미 국

- 1958년 연방항공법(Federal Aviation Act) 제정

▶ 영 국

- 1979년 항공운송 및 도로법(Carriage by Air and Road Act)을 제정

▶ 독 일

- 1922년 항공운송법(Luftverkehrsgesetz)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하여 시행

▶ 프랑스

- 1976년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법」을 제정

▶ 일 본

- 우리와 같이 항공운송에 관한 사법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없음
- 국내운송은 항공운송약관을 적용하고, 국제항공운송은 Warsaw 협약 및 Hague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어 그에 근거함

4. 항공운송인 책임의 규범화

◎ 규범화 방안

- 항공기운항자의 민사책임을 규범화 하는 방법으로는 i) 상법상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ii) 현행 항공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iii)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음

◎ 내용

- 책임의 명확한 규정
 - 가장 최근 발효된 1999년의 Montreal 협약 등을 최대한 수용
 - 책임 원칙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책임제한(유한책임) 여부에 대한 검토
 - 항공산업의 보호라는 명목아래 여객 1인당 책임제한을 당연히 해왔음
 - 항공운송의 경우만 개별적 책임제한 존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도산법

1.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도산상태에 빠진 사람이 도산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시도가 많아지게 되므로 신청을 주저할 수밖에 없음
- 현행법은 보전처분기간을 개시결정 신청 후 7일 이내로 단축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억지하고 있음
- 그러나, 도산절차 신청인의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에 의한 일체의 채권회수활동을 금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의 도입 검토 필요

※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

-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산절차 외에서 채권자가 신청 전에 가지고 있던 채권 회수 또는 행사를 금지하는 것
- 절차진입 순간에 채권자가 한꺼번에 달려들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채무자의 새출발, 채권자 동등 취급을 목적으로 함

◎ 개선방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도입 검토

2. 사전계획안제도(Prepackaged Plan)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미국의 사전계획안에서 기본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이지만 미국의 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제도임
- 즉 미국 연방파산법(제1121조(a))상 사전계획안제도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가 대다수의 채권자들과 채무조정안을 합의함으로써 이러한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는 소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법정외 합의절차를 말함
- 현행법상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신청전에 법률상 채무조정안 통과에 필요한 채권자들의 집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러한 채무조정안을 회생절차와 함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 및 회생을 위해서 도입 검토

◎ 개선방안

- 실무 운용 상황을 점검, 현행 규정에 대한 개정 여부를 논의



3. 개인회생을 위한 민간제도와 법적제도의 연계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상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신용상담을 받는 경우이외에 어떠한 사전교육 없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하는 실정임
- 미국, 독일의 입법례를 반영하여 법적제도로 진입하기 전에 민간 제도에서의 상담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 개선방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중심으로 사전상담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기관의 사전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4.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간의 전환

◎ 현황 및 문제점

-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간의 전환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진입 창구는 다르지만 파산과 회생 간의 절차간 이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식이 절차의 효율성, 비용부담축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개선방안

-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 개정 논의

■ 세법

1. 세법의 법치주의 실현 (조세법률주의)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재판소의 총 위헌결정 사건 137건 중 47건(34%)이 세법에 관한 사항이며 주된 쟁점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관한 것임(2004년 기준)

※ 조세법률주의

-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 규정.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함
- 과세요건법정주의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물론 그 밖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반드시 법률로서 정하여야 함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부령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여야 함
- 역동적인 경제현상과 관련된 조세행정은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국가권력의 행사이며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의 여지가 상존하는 부문이라는 점에서 법치주의의 요구가 높음

◎ 개선방안

- 조세행정의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서 입법·사법·행정의 유기적 통제가 필요하며, 정부의 입법시스템 내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사법심사절차에 대해 법제적 연구 필요

2. 기업회계분야에서 세법과 상법의 조화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의 회계에 관해서는 상법이 일반규범이며 세법(세무회계), 기업회계기준 등은 특별규범이라 할 수 있음
- 기업회계의 근간이 되는 상법과 기업회계기준은 자산의 가치평가에서부터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관련 조항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 발생

◎ 개선방안

- 전체 기업에 적용가능한 필수적인 기업회계원칙은 상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회계규정은 세법(세무회계)을 비롯한 관련 회계규범들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정립



■ 공정거래법

1. 지주회사제도

◎ 현황 및 문제점

- 지주회사체제는 분사화를 통해 비주력 사업부문의 분리매각이 쉬워 원활한 구조조정에 유용한 기업조직형태라 할 수 있음
 - ※ 지주회사란 주식소유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고 이론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보유외에 사업도 영위하는가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함
-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할 경우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해지고 소수주주·채권자 등의 경영감시와 책임추궁이 용이해지는 등 기업집단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개선방안

- 지주회사제도의 장·단점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업에 적합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 검토
- 지주회사체제 전환을 강제하기보다는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유도가 바람직



2.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현황과 문제점

-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시장에 노출되지 않고 동일인 등 소수의 주주에 의해 운영되는 상황은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그러나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주주 명부비치 등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는 상황임

◎ 개선방안

- 비상장회사의 공시대상, 공시사항, 공시방법, 불성실 이행행위 유형, 수탁기관의 업무 등의 구체적 공시방법의 연구 필요

■ IT법제

1. 해상운송서류의 전자화

◎ 현황 및 문제점

-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전자무역의 추진과 더불어 해상운송서류의 전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별 법률의 해석·적용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2005년 3월에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으로 약 56개의 특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상법은 제외되었음

◎ 외국입법례

- 호주 해상운송서류법, 미국의 해상물건운송법 개정안, UNC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운송법협약초안 등

◎ 개선방안

- 상법 제874조의2를 신설하여 상법 제5편 해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신청, 통지, 보고, 운송계약서 및 운송서류의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



2. e-Business 지원 법제

◎ 현황 및 문제점

- e-Business는 기업의 내부활동, 협력업체 및 고객과 협력 등 모든 기업활동 IT화를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
- 우리나라의 전자거래 규모는 2000년 58조원에서 2004년 300조원으로 500%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에서 19.1%로 크게 증가

◎ 개선방안

- 산업자원부와 협력하여 IT에 근거한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자거래에 규범 정착을 위한 법체계 정비

3.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전자거래는 단 한 번의 거래로 기존 거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의 규모도 매우 큼

◎ 개선방안

- 입법에 의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거래관행의 발전 그리고 기술개발 등을 지켜보면서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속적인 연구 필요

II. 민사관련 법령

1.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민법 제정후 반세기가 경과한 현재, 등기는 물권의 존재 및 귀속을 파악하는데 거의 절대적인 지위
- 등기가 실체와 부합하여야만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등기제도 자체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 외국의 입법례

▶ 독 일

-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취득자를 보호

▶ 프랑스

- 등기에 대하여 권리의 추정력만 인정되고,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음

▶ 일 본

- 등기의 공신력은 불인정
- 일본 민법 제94조 제2항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사실상 공신의 원칙에 같음하는 기능

◎ 개선방안

- 부동산 거래의 안전보호 및 자산의 활발한 유동화를 도모키 위하여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 인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 있음
- 다만, 이를 위하여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 부실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등기제도 구축 등 민법 전반에 관하여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2.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폐지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일치여부를 묻지 않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인정
- 그러나, 등기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된 현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제도의 기능 및 존속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기됨

◎ 외국의 입법례

▶ 독 일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등기부취득시효제도만을 인정

▶ 프랑스

-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며, 선의이고 올바른 권원인 경우에는 10년 또는 20년의 단기취득시효를 인정

▶ 일 본

-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

◎ 개선방안

-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 공시제도가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어 현재의 점유 취득시효제도 폐지 검토

3. 부동산거래 공증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는 등기가 부동산물권의 성립요건이기 때문에, 등기가 부동산물권의 변동과정을 그대로 공시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큼
- 사인간의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검인해주는 현행 부동산실명제만으로는 부실등기를 차단하기에 불충분

◎ 외국의 입법례

▶ 독 일

- 토지소유권 매매 등의 채권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야 함

▶ 프랑스

- 부동산 거래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의 개입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등기가 행하여짐

▶ 일 본

- 일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증이나 공증은 하고 있지 않음

◎ 개선방안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관해 진실 대로 공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검토



4. 소유권보존등기 의무화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일정한 기간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하여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국가공평과세 취지 훼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

◎ 외국의 입법례

▶ 일 본

-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표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함

▶ 미 국

- 부동산 공시제도가 레코딩 시스템과 토렌스 시스템으로 대별
- 레코딩 시스템은 부동산거래가 있을 때 작성하는 사문서인 서명증서(Deed)를 등록소에서 그 연대적 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방법에 의한 등록방법임
- 토렌스 시스템은 철저한 권원조사를 하여 권원 자체를 등기하고, 그 등기된 권원은 확정적 효력과 절대적 유통성을 갖도록 함

◎ 개선방안

- 우리나라도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 강제주의를 적극 도입하는 방안 검토

5. 동산담보제도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기업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동산은 선박, 항공기, 공장, 광업재단 등 개별 특별법이 적용되는 물건들로 제한
- 고가의 기계를 개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이나 각종 영업 재산(유체물, 외상매출채권, 선하증권 등)을 포괄하여 담보로 제공할 방법이 없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은 금융기관 대출 접근이 어려움
-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에서는 비금융권에 양도담보로 고가의 기계를 제공하거나 매출채권을 헐값에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회사의 영업을 하나의 권리객체로 인정하여 그 위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영업담보(floating charge)제도 정착

◎ 개선방안

- 효과적인 동산담보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비점유형 동산담보를 도입하거나, 미국과 같은 유형의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6. 저당권의 유동화

◎ 현황 및 문제점

- 부동산 저당권의 엄격한 부종성, 유통성 제한, 공신력 불인정 등은 신용확보 기능에 장애로 작용
 - World Bank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신용확보절차는 세계 25위, 재산권 등록시스템은 세계 64위에 불과
- 저당권의 유통성이 제한되어 기업 재산의 담보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담보가치의 활용과 관련한 기업의 거래비용이 높음

◎ 외국 입법례

- 독일은 보전저당권, 유통저당권으로 저당권을 이원화하여 후자는 증권을 통하여 전전 유통할 수 있고, 일본도 저당증권법을 통해 이를 수용함
- 유럽 동구권 국가는 유럽부흥개발은행의 도움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는 아시아개발은행의 도움으로 비점유형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함

◎ 개선방안

-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소유자 저당을 허용하고, 일반 저당권이외에 유통 저당권을 신설하여 전전 유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7. 보증책임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상당수의 보증은 개인적 친분이나 신뢰관계로 대가없이 이루어지는 호의보증으로 뜻밖의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 빈번
- 보증인에게 무차별적인 채무변제의 독촉으로 재산적 부담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사례 빈번

◎ 외국 입법례

- 독일, 프랑스, 일본은 보증책임 성립요건 강화(서면주의 등) 및 포괄근보증에 대한 규제 등으로 보증인을 보호
- 미국의 경우 대부분 법인보증(보증보험회사)으로 보증인 보호의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아니함

◎ 개선방안

- 보증금의 채무를 원금으로 제한하고, 보증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며 상속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채권추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채권자에게도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과잉채무독촉행위 금지의무 부여방안 검토



8. 임대차 보증금반환 보장보험 제도

◎ 현황 및 문제점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실정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만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는 임차인에게는 매우 가혹한 상황

◎ 개선방안

- 임대차보증금이 일정한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 임대인은 그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개정 검토
-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장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장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9. 상가건물 소액임차보증금 범위 확대

◎ 현 실태

- 소액임차보증금(서울 : 4,500만원, 과밀억제권역 : 3,900만원, 광역시 : 3천만원, 기타지역 : 2,500만원)에 대하여는 일정 금액(서울 : 1,350만원, 과밀억제권역 : 1,170만원, 광역시 : 900만원, 기타 지역 : 750 만원)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음
-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대항력만 갖추면 이를 보호함

◎ 문제점

- 적용될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 자체가 너무 낮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가 많지 않음
-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금융기관 등에 대출이 되어 최우선 변제권 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 영세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개선방안

-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상향 조정 검토
- 상향조정시 상인의 영업자금조달이 어려워지거나 임대료 폭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보완장치 마련 필요



10. 성년후견제도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민법상 획일적인 금치산·한정치산 2가지 제도만으로는 다양한 인간의 정신능력 상태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움
-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제도는 본인 보호의 목적 외에 가산 유지의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음

◎ 외국 입법례

▶ 독일

- 1990년 성년자의 후견 및 감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통과되어 정신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을 때 후견인 선임 가능

▶ 일본

- 1999년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종래의 금치산 및 준금치산 선고제도 철폐, 성년후견제·보좌제·보조제 등 3가지 제도 신설

◎ 개선방안

-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성년후견제도를 정비
- 고령치매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등이 놓인 사회적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



국제규범 및 소송법제 중점과제

I. 국제규범

1. 국제규범 수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개요

- 국제교류 증대와 민·상사 규범의 세계적 통합 양상에 따라 각종 규범의 통일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
-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규범 적시 가입과 국제통일규범 도입·수용의 필요성 절실

◎ 주요 국제회의별 국제협약 가입현황

국제회의	국제규범 제정 현황	우리나라 가입현황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 (UNCITRAL)	· 상거래분야 협약 9개 - 국제전자계약협약 등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집행에 관한 협약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HCCH)	· 협약 37개 - 소송 등 국가간 협조 - 국제적 가족 보호 - 국제상거래법 등 분야	· 헤이그 송달협약 · 헤이그 아포스티일 협약
사법통일 국제기구 (UNIDROIT)	· 협약 10개 - 이동장비에 관한 국제 담보 협약, 항공기의정서 등	· 가입 협약 없음



◎ 국제규범 수용 활성화 방안

- 국제회의 지도자 양성
 - 개방직 도입을 확대하고, 국제회의 전담자 장기근무방안을 수립하는 등으로 법무부 내 전문인력 양성
 - 국제거래법연구단 등을 통한 학계와의 연계를 강화
 - 국내 전문가 그룹 양성 및 국제회의 주도그룹 진입을 적극 지원
- 국제거래법연구단의 중심적 역할 강화
 - 국제거래법연구단이 L-project의 일환으로서 국제규범의 국내도입을 통한 국내법제 선진화 임무 수행
 - 참석대표의 주기적 회의경과 보고, 국제규범과 관련한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하여 국제거래법연구단 내에서의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규범성안에 적극반영
 - 국제규범으로 수용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인자를 개발, 성안된 규범은 물론 성안과정에서의 논의사항 등의 체계적, 효율적 수용 추진
- 국제기구 및 재외공관 진출
 - 국제기구 중요 부서에 법무부 공무원을 직접 파견하여,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 있어 주도적 참여 추진
 - 헤이그 등 국제기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법무협력관 추가 파견
 - 기타 국제기구 주요인사 및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인사와의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심층적인 논의동향 수집

2. 국제규범 수용 분야

◎ 국제전자상거래 관련 논의 통합 참여 및 연구

- UNCITRAL 국제전자계약협약 가입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 확보
- 국제중재, 운송, 정부조달 등 다른 국제규범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논의에 통합적 참여 및 연구

◎ 한중일 국제매매법의 실질적 조화·통일 도모

-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엔국제매매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일본은 아직 미가입한 상태임
- 국제매매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대리, 계약의 유효성, 상계, 시효 등)에 대하여는 한중일 3국간 분쟁발생 가능성 상존
- 한중일간 국제매매법의 통일 및 실질적 조화방안 논의 주도

◎ 국제 소비자파산 관련 논의 주도

- UNCITRAL에서의 국제도산법 관련 논의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 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주로 기업집단의 국제도산과 기업회생 등에 치중하고 있음
- UNCITRAL 도산법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고 국제 소비자 파산에 대한 국제적 논의 주도



◎ 국제 민사사법공조 활성화

- 우리나라는 헤이그 송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헤이그 증거수집협약에는 미가입
- 헤이그 증거조사 협약가입, 비회원국가와의 개별 조약체결 추진 등으로 해외증거조사 관련 국제공조 활성화 도모
- 한·중·일 통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체제 구축의 기틀 마련

◎ 국제가족법 협약 가입

-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를 중심으로 가족과 관련된 국제규범들이 성안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가입실적이 전무함
- 국제가족법은 법원간 국제적 연락과 협조가 특히 중요한 분야
- 아동탈취협약, 국제아동입양협약, 가족부양협약 등의 비교법적 검토 및 가입 추진

3. 국제규범 활성화 방안

◎ 동아시아 국제규범 아카데미 설립

- 동아시아 국제규범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내 국가간 국제기준에 맞는 통일규범을 마련하고, 국제회의의 공동대처를 주도
-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동아시아 국가에 우리 법률시스템을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

◎ 정부부처 국제회의의 활동지원

-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관세협력이사회(CCC) 등 우리나라가 이미 가입한 일부 국제회의의 경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각 지대에 놓여 방기되고 있는 실정임
- 국제상거래와 간접적인 관련있는 국제회의를 발굴하고, 관련 정부부처와 공동대처체제 확립



II. 소송법제

1. 집단소송제

1 집단소송제도 개관

가. 의의

- 다수인이 공통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일부가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제도를 말함
- 주로 소비자 · 의료 · 환경 · 증권 분야 등에서 논의됨

나. 논의 경과

- 2005. 1. 증권거래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자산 2조원 미만 법인은 2007. 1. 부터 적용)
- 2006. 9. 「소비자보호법」의 개정(2008. 1. 시행)으로 단체소송 도입됨

다. 입법례

▶ 미 국

- 일반 민사소송절차로서의 대표당사자소송법은 개정안만 난무 하였을 뿐 2005년까지는 개정안 불발

- 다만, 증권분야와 관련하여 2개의 개혁법안 성사
 - 1995년 미국 증권민사소송개혁법
 - 1998년 증권소송통일기준법
- 2005년 대표당사자공정법(Class Action Fairness Act of 2005) 입법
 - 대표당사자소송 일반에 대하여 중대한 수정을 가한 최초의 법

▶ 캐나다

- 1978년 퀘벡주 민사소송법 개정, 대표당사자소송 인정
- 1992년 온타리오주 집단소송법 제정

▶ 독일

- 전통적으로 부정경쟁법, 금지청구법 등에서 단체소송만 인정
- 최근 미국식 집단소송과 유사한 표본소송제도 도입

2 도입에 대한 검토 의견

- 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이 많이 주장되는 실정
 - 고비용·저효율의 집단분쟁해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 소비자 중심의 권리구제수단 확보 및 불법·부당행위 예방
- 다만, 모든 분야로 집단소송을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남소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징벌적 손해배상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관

가. 의의

-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행위에 정상이 가중될만한 특별한 사유(악의적, 의도적 행위)가 수반되는 때에는, 원고가 현실로 입은 손해를 초월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제도

나. 입법례

◎ 영미법계

-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초기에는 가해자의 악의(malice)가 있는 불법행위에만 인정하다가 중과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무분별한 무시(reckless disregard)에 따른 불법행위에도 확장
 - 최근에는 악의적인 채무불이행 소송에도 인정하는 경향
- 영국의 징벌적 손해배상(1964년 Rookes 사건 판결로 원칙 확립)
 - ①국가권력의 불법행위 ②통상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이익이 남는다는 판단에서 저지른 불법행위 ③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
- 대륙법계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는 모두 부인

다. 제도의 장·단점

◎ 장점

- 악의적 불법행위 억제 : 특별예방효과 및 일반예방효과
- 통상적 배상으로 불충분한 실질적인 손해 전보

◎ 단점

- 천문학적 손해배상 판결로 인해 정상적 기업활동 위축
- 징벌적 성격의 고액 손해배상금을 피해자 개인이 취득하므로 일확천금을 노린 부도덕한 불법행위 소송 유발 우려

2 도입에 대한 검토 의견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제도의 부작용을 비교 형량하여 효율성이 큰 분야부터 순차 도입 검토
- 도입이 필요한 분야
 - 사이버 명예훼손, 국가배상책임, 증권거래분야, 보험계약분야, 언론책임, 제조물책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3. 국민소송제

1 국민소송제도 개관

가. 의의

- 국민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이나 공금지출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행위의 중지·취소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말함

나. 제도의 연혁

◎ 납세자소송(Taxpayer's Suit)

- 미국에서는 19세기부터 발달하여 현재는 거의 모든 주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1968년 이후 연방정부까지 확대
- 일본은 미국의 납세자소송제를 도입·시행하다가, 196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소송”이라는 명칭 사용

◎ 허위청구방지소송(Qui Tam Action)

- 악의적인 사기를 통해 정부가 과잉지출을 하게 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하여 과잉 수령한 금전을 반납하게 하는 소송

2 도입에 대한 검토 의견

- 국민소송제도 도입 논의가 활발함
- 다만, 제도의 도입시 국민의 직접 감시를 통한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기대 효과도 있지만, 남소로 인해 국책사업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도 적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가 2006. 1. 부터 시행중이므로 주민소송제도의 시행경과를 지켜보면서 그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함이 상당



4. 재판외 분쟁해결제도

1 재판외 분쟁해결제도(ADR) 개관

가. 의의

- 화해·조정·중재 등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민사분쟁을 처리하는 제도를 총칭함

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목적과 특성

◎ 목적

- 법원의 사건폭주와 이에 따른 사건처리의 지연을 방지
- 분쟁해결비용의 절감
-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 제공

◎ 특성

-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에 의한 분쟁해결
- 당사자 본인들의 의사결정 존중

2 ADR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가. 행정형 ADR의 활성화

- 홍보 전담부서 설치 등으로 행정형 ADR에 대한 홍보 강화
 - ※ 행정형 ADR :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산하 기관 등에 설치된 기구에서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실무형 위원의 확충, 조정의 효력 규정 통일 등 분쟁해결기구의 구성, 분쟁해결 절차 및 효력 등 개선

나. 민사분쟁의 형사사건화 방지를 위하여 형사절차에 ADR 도입

- 조정을 통해 고소사건이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고소사건 조정제도 도입 검토
- 증거 편중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사 증거개시제도 도입 검토

3 도입에 대한 검토 의견

- 재판외 분쟁해결절차를 활성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
 - 복잡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전통적인 재판제도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성격의 분쟁이 자주 발생
- 다만, 자율성·유연성·경제성·다양성 등과 같은 ADR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는 후 단계적 추진 검토

L - PROJECT

- **발 행**

법무부 법무실

- **집필진**

법무심의관 박민표 법무과장 강인철 국제법무과장 김영준
송무과장 염동신 특수법령과장 공상훈 법조인력정책과장 우병우
법무심의관실 양근복 조동관

- **디자인 및 제작**

한양애드 02 2279 0814

L - PROJECT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법무실 02-502-4127